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(신청) 접수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,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12

전주시 덕진구청장



□ 신규지정(신청) 내용

-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현황

구분	상호	영업소 위치	소매인 구분
폐업	부영그린마트	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80,1층	제7조의3제2항
신규지정	-	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6, 상가1동 106호	에 따른 경우

- 신청기간 : 2026. 10. 12.(월) ~ 2026. 10. 19.(월)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
- 신청대상 : 폐업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희망자
※ 「담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 구비하여 접수처에 방문 신청
- 접수처 :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(☎ 063-270-6351, 덕진구청 별관 1층)

□ 신청서류

공통 서류	-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공동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표기) - 점포(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)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- 신청인 신분증* * (대리인 방문 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1부,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
우선지정 대상 신청자 추가 서류	-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또는 장애인등록증** ** (신청인이 ‘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’ 의 가족인 경우)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※ 국가유공자 등 가족은 동일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※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한 경우 점포의 사용권리증명서류상 우선지정 대상자명의 포함되어야 함

□ 참고사항

-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 하며, 1인 신청일 경우는 추첨 생략
-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담배소매인을 신청할 경우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(우선지정이 2인 이상의 경우 추첨)
- 추첨 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